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4차 개정 FAQ

조항	질문	답변
<b>제 3 조 (용어의 정의)</b>	비급여 일반의약품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협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규약")의 적용 대상입니까?	규약 3 조 제 1 항 (이하 3.1 의 식으로 표시)에 따르면 비급여 일반의약품은 규약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약사법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의과대학 소속이나 보건의료전문가가 아닌 교수에게 기초연구 또는 임상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규약의 적용대상인지?	규약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사안별 개별검토를 요합니다. 규약 3.5 및 5.1의 규정에 따르면 본 규약은 사업자와 요양기관 등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와의 관계에서 적용되므로 해당 연구자가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보건의료전문가도 규약적용대상이 되는지?	규약 상 보건의료전문가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를 말합니다. 외국국적 소지자인 경우라도 대한민국법 상 보건의료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규약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요건 중 "5 개국에서 내한 해야 한다"의 5 개국에 한국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한"이라 함은 외국인인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한국에 오는 것을 말하므로 5 개국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b>제 5 조 (금품류 제공의 제한)</b>	규약 제 5 조 제 4 항의 요양기관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단체의 범위는?	2011. 4. 본 협회 규약심의 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사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건의료전문가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원진의 3분의 1 이상 이 보건의료전문가 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요양기관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단체로 판단합니다.
	의료기관에 거래수량에 따라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사안별 개별 법률검토를 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가격 차별이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공정거래위원회 실무는 같은 취지에서 의약품의 경우에도 “주문수량의 다과에 따라 제품 공급에 따른 한계비용의 차이를 반영하는 Volume discount에 한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판단하는 수준의 가격결정은 쌍벌제로 처벌할 가벌성이 없어 문제 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와 달리 “개별 주문수량의 다과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일정기간의 주문량이 일정액 이상에 이르면 공급 단가를 할인 해주는 방식의 거래”는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제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p>
제 6 조 (견본품의 제공)	최소수량의 의미가 무엇인지?	<p>“최소수량”은 최소포장단위 1 개 를 1 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다만, 제형 등에 중대 한 변화가 있거나 달리 최소포 장단위 1 개의 제공으로 제형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소수량으 로 추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p>
	최소 포장단위의 의미는 무엇인지?	<p>“최소 포장단위”라 함은 약사법에 따라 제조, 수입 및 판매되는 해당 품목의 여러 포장단위 가운데 외부 포장용기를 개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최소량의 의약품을 내장하고 있는 포장단위를 의미합니다.</p>
	이미 요양기관에 공급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해당 요양기관 소속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p>해당 요양기관 내에서 보건의료전문가가 의약품의 처방에만 관여하고 투약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해당 요양기관에 공급되고 있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보건의료전문가가 의약품의 제형 등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포장단위 최소수량의 범위 내에서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p>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견본품 제공이 가능한지?</p>	<p>불가합니다. 견본 의약품 제공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견본품은 요양기관의 담당 부서를 통하거나, 담당 부서가 없는 경우 요양기관 관리 하에 소속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요양기관의 약품목록등록을 위하여 약제과 직원에게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p>	<p>불가합니다. 규약 5 조 및 6 조의 규정에 따르면 규약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양기관에 견본품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보건의료전문가가 아닌 약제과 직원에게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약품 목록등록을 위하여 의약품의 실물확인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등록완료 시 반환하여 줄 것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p>
	<p>제품 자체의 변경 없이 수입자명 또는 포장만을 변경하는 경우 견본품을 다시 제공할 수 있는지?</p>	<p>불가합니다. 포장의 변경이 중대하여 견본품을 다시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의약품의 사용자에게 의약품의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대한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장변경으로 인한 견본품 재 제공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자명 또는 경미한 포장변경의 경우에는 견본품을 다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기존 정상제품에 견본품임을 표시하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것이 가능한지? 견본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포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p>	<p>반드시 별도의 포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견본품은 제형,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상제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p>
<p><b>제 7 조 (기부행위)</b></p>	<p>보건의료전문가에게 의학저널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p>	<p>불가합니다. 비록 의약품의 판매촉진목적 없이 과학적, 교육적인 목적일지라도 규약 5 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학저널 제공은 규약 7 조의 기부행위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자선목적의 의약품기부의 경우 기부금액에 상한이 있는지?</p>	<p>의약품 기부의 상한금액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규약 7.1.1의 기부행위원칙을 준수하고 규약 7.4의 취지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의 자선활동에 필요한 범위(목적, 사업기간, 대상인원 등) 내에서 의약품을 기부하는 경우 규약에서 달리 상한 금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p>
	<p>사업자가 사회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비영리기관)에 의약품을 기부할 수 있는지? 기부 시 의료인 또는 약사가 있음을 확인해야 하는지?</p>	<p>사단법인이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요양기관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의 기부행위규정에 따라 의약품지원 10일 전까지 협회에 사전신고 및 지원 후 결과보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협회 규약 심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건의료전문가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원진의 3분의 1 이상이 보건의료전문가 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요양기관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단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도 약사법 상 의약품 취급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p>
	<p>의약학 연구에 쓰일 용도로 의약품을 기부하는 것이 규약이 정하는 자선적 목적의 의약품 기부에 포함되는지?</p>	<p>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약학 연구에 쓰일 용도로 의약품을 기부하는 것은 자선적 목적의 의약품 기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p>
	<p>사업자와 학회가 공동으로 일반인 대상 질병예방 행사를 개최하고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p>	<p>사안별 개별 검토 요망합니다. 학회가 단독 또는 공동주최하여 주도하는 행사에 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해당학회에 그 비용 상당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p>
	<p>사업자가 규약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지원하는 학술상의 홍보를 위해 해당 학술상 모집 공고 템플릿을 직접 제작·배포 가능한지?</p>	<p>불가합니다. 규약 7.1.3의 규정에 따르면 협회의 승인을 얻은 학술상 시상 사업은 학회가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이러한 학술상의 홍보를 위한 관련 템플릿 배포는 학회의 업무이고 이를 사업자에서 대신해 주는 것은 승인사항 외 사항입니다. 즉, 해당 상의 운영금액에 포함</p>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켜서 승인 받아 해당학회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고, 사업자가 이를 직접 제작, 배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환자단체 등에 (HCP 포함) 물품 등의 기부가 가능한지?	사안별 개별 검토를 요망합니다.
<b>제 8 조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b>	주요임직원이 한국 선생님들로 구성된 해외학회가 해외에서 학술대회를 여는 경우, 이에 대한 후원이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주요 임직원이 한국 보건의료전문가인 해외학회에 대한 지원은 사업자와 한국 보건의료전문가(들) 간의 관계에 해당하여 규약의 적용대상입니다. 규약 제 8 조의 규정예 따르면, 개최운영지원이 허용되는 학술대회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한정되므로, 본 건 학술대회는 사업자의 개최운영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술대회가 완료된 후 행사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자사제품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지?	학술대회에 시간 및 장소적으로 인접한 제품설명회를 별도 개최하는 것은 제품설명회의 원래 취지를 손상시키고 부당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품설명회의 요건 및 적법성 담보 가능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법률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시/공간적 단절성)
	학술대회시 개최되는 Luncheon Symposium 에 대해 규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원하는 경우, Luncheon Symposium 의 강연자, 좌장 등에 대한 비용을 제약사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지?	강연자 및 좌장 등에 대한 직접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규약 10.1 와 운용기준 5.8 에서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의 일부로 보고 있으므로, 강연자 및 좌장에 대한 비용지급은 학술대회 주최 측으로부터 제공되어야 합니다.
<b>제 9 조 (학술대회 참가지원)</b>	사업자의 본사가 후원하는 해외 training 에 한국 보건의료전문가 를 단순 trainee 로 참석시키고, 그 비용을 한국 사업자가 부담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합니다. 본사가 후원하는 해외 training 에 한국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단순 trainee 로 참석시키고 그 비용을 한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현행 규약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시 국내 관련 학회가 제출하여야 하는 위임장의 요건은?	학술대회 참가지원 위임장에는 1) 위임하는 주체에 대한 정보와 2) 위임 내용 및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임 주체를 확인하는 정보로는 단체 명칭, 위임자명, 위임자 직책, 서명 또는 날인 등이 있으며,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 내용 및 범위에는 학술대회명, 개최기간, 개최장소,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지원자 선정과 지원 업무를 위임함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학술대회 참가지원 지원내역을 검토하는 중 지원금액이 과도하게 요청한 경우 협회는 어떻게 하는지?	협회는 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에 따라 영수증에 근거한 실비 또는 실비상당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일부 항목이 과다 청구된 경우 그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사유에 따라 지원금 일부를 삭감하여 지원하기도 합니다.
	보건의료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도 학술대회 참가지원이 가능한지?	불가합니다.
<b>제 10 조 (자사제품 설명회)</b>	조영제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의사, 약사 이외에도 CT 기사, MR 기사 및 sonographer 등의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학회지원 또는 제품설명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는데 허용이 되는 것인지?	약사법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이하 "보건의료전문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 CT 기사나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나 식음료 등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2011. 2. 14.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보건의료전문가에 평점을 부여하는 행사의 경우 자사제품설명회로 볼 수 있는지?	불가합니다. 제품설명회는 사업자가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하므로, 평점부여 여부와는 별개로, 개별행사 별로 규약 제 10 조의 제품설명회 기준에 따른 법률판단을 요합니다. 참고로, 평점이 부여되는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규약 제 8 조(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에 따라야 합니다.
	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세무, 법률 또는 경영교육이 제품설명회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약 3.9 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주최행사로써 허용되는 제품설명회는 사업자가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공하는 행사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세무, 법률 또는 경영교육 등의 행사는 규약에서 허용하는 제품설명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p>
	<p>제품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다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p>	<p>가능합니다. 운용기준 7.1의 규정에 따르면 식음료는 다과비를 포함하여 각 식사당 10만 원(VAT 별도)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으므로 다과는 위 식사당 총비용 한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최되는 행사의 경우 사회 통념상 1회의 식사(점심)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식사 전후로 다과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식사비와 다과비의 총액이 1인당 10만 원(VAT 별도) 한도 내에서 허용됩니다.</p>
	<p>제품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의료 전문가의 여비로서 대리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p>	<p>불가합니다. 대리운전비는 보건의료전문가가 운전이 어려울 정도의 주취상태인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사회 통념상 의약학적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에 필수 불가결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이 구비되는 경우에도 규약 및 운용기준 각 7.1의 여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p>
	<p>전라도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p>	<p>사안별 개별 법률검토를 요합니다. 규약 3.9 및 10.1에 의하면 제품설명회에 취지를 고려할 때 제품설명회의 장소선정은 이에 수반되는 여비 등의 비용이 의약학적 정보전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비용임을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장소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참석자의 상당수가 부산에 근무하여 부산에서 자사제품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전라도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일부 함께 참석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나, 참석자의 상당수가 전라도 지역에 근무하고 전라도 지역 내에서 적합한 장소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한다면 이러한 지역 선정의 합리성을 소명하기 어려울 것으로</p>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됩니다.
	사업자가 해외학술대회 기간 중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10만원 이내(VAT 별도)의 식음료만을 제공 하는 제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불가합니다. 규약 3.9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식음료를 제공하는 제품설명회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에 한정되므로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저녁 시간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하는 일부 지방 거주 보건의료전문가들에게만 숙박이 제공되는 경우도 사전승인 대상인지?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규약 10.2의 규정에 따르면 참석 보건의료전문가의 일부에 대해서만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식음료를 제공하는 개별요양기관 방문 제품설명회의 월 4회 제한이 회사별 4회인지 제품별 4회인지?	규약 10.4 및 운용기준 7.5의 규정에 따르면 본 조의 횟수제한은 각 사업자에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회사별 4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의학부서의 임상시험 담당자가 임상시험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보건의료전문가를 만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개별요양기관 방문 제품설명회의 횟수제한의 적용을 받는지?	임상시험에 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하고 식음료 부담의 내용과 범위가 임상시험 관련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문면담(예컨대 연구자 미팅)은 위 계약의 이행에 관한 활동으로서 제품설명회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횟수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규약 10.4 및 운용기준 7.5의 규정은 회사 직원 전원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의학부서 직원의 방문의 경우에도 위 횟수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OO 대학교 병원 본원과 OO 대학교 병원 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가 복수기관제품설명회에 해당하는지?	해당됩니다. 기관의 복수성은 의료기관 단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학병원 본원과 분원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개설된 경우 본원 소속과 분원 소속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는 복수기관 제품설명회에 해당됩니다.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학술대회에서 비급여 일반의약품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하는 경우 규약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p>	<p>규약의 의약품이라 함은 전문 의약품과 급여되는 일반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비급여 일반의약품의 경우 규약의 적용 대상은 아니나 약사법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약사법을 준용한 규약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p>사업자가 학술대회 전날 또는 종료일 당일 satellite symposium 또는 luncheon symposium 이 아닌 숙박제품설명회 또는 당일 제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p>	<p>규약 제 8 조에 따르면 학술대회와 연계되어 있는 제품설명회는 원칙적으로 satellite symposium 또는 luncheon symposium 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학술대회에 시간 및 장소적으로 인접한 제품설명회를 별도 개최하는 것은 제품설명회의 원래 취지를 손상시키고 부당한 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품설명회의 요건 및 적법성 담보가 가능 여부를 개별 사안 별로 법률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p>
	<p>회사가 제 3자와 계약을 맺고 디테일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 제 3자 회사가 제공한 식음료 제공 횟수도 회사가 제공하는 식음료 제공 횟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제 3자회사는 제약회사가 아니며, 사전에 식음료 제공의 횟수나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시나 지침을 받지 않으나 식음료 제공에 사용된 금액은 추후에 reimbursement (상환) 의 형태로 제 3자회사에 지불되는 경우)</p>	<p>포함됩니다. 본건 질의 상의 제 3 자는 "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의약품의 판촉활동을 하는 회사"에 해당하고, 위 제 3자가 그 서비스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자의 제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횟수나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시나 지침을 받는지, 독립적인 sales target 및 비용관리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규약해석 상 사업자의 제품설명회에 관한 식음료 제공행위로서 사업자의 식음료 제공 횟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p>
	<p>자사제품설명회 개최 시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식음료 제공을 쿠폰발행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p>	<p>행사 당일, 행사 장소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권의 제공은 식음료 제공의 방법으로 허용되나, 위와 같은 제한범위를 넘어서는 쿠폰(예컨대 호텔 기념품 구매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은 식음료 제공의 방법을 넘어서는 유가증권의 제공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p>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소액의 판촉물로 특정 학회의 학회지 제공이 가능한지?</p>	<p>불가합니다. 사업자가 학회로부터 학회지를 대량으로 유상 구매하여 보건의료전문가들(학회 회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게 배포하는 것은, 실제로 사업자가 학회의 학회지 제작비용을 보전해주거나 학회에 학회지 판매사업 이익을 제공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2019.1.1.시행되는 IFPMA Code of Practice에 따라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한 물품의 판촉물 사용이 금지됩니다.</p>
	<p>satellite symposium 또는 luncheon symposium 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p>	<p>불가합니다. Satellite symposium 또는 luncheon symposium는 규약 10.1의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이므로 규약 10.1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념품 제공이 가능하나, 규약 10.1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의 일부로 보아 이에 대한 지원은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의 규정에 따라 학회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satellite symposium 또는 luncheon symposium에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사업자가 직접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p>
	<p>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제품설명을 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제품설명을 마친 후 식사 시간에 방문한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식당으로 불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규약위반인지?</p>	<p>일반적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간단한 제품설명을 하고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규약의 목적에 합당하겠으나, 식사시간이 아닌 시간에 디테일링을 하고 식사시간에 맞춰 디테일링을 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을 한자리로 것은 규약개정 취지에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p>
	<p>단일기관 제품설명회시 판촉물 제공 횟수 제한은 있는지?</p>	<p>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판촉물 제공은 제품설명을 수반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p>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회 장소에 대한 기준은?	우리협회규약심의위원회는 IFPMA의 Code of Practice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스포츠, 레저 등의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에서의 행사개최를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숙박 제품설명회 심의시 적절한 행사 장소에 대해 부대시설 여부, 숙박비, 장소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기로 하였습니다.
<b>제 11 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공)</b>	임상용 의약품 제공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을 참조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공급, 인수, 반납 및 폐기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면 됩니다.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KGCP) )
<b>제 12 조 (시장조사)</b>	응답시간이 30 분 이상 소요되는 시장조사의 판단기준은?	시장조사의 문항 수 및 난이도에 비추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적인 보건의료전문가를 기준으로 할 때 예상되는 평균적인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약사법상 허용행위로 규정되지 아니한 시장조사를 규약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경우 약사법 위반에 관한 회사의 책임은 없는지?	규약을 준수하더라도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장조사를 회사의 판촉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무부서의 판단에 따라 허용행위에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규약 2 조, 3.10, 5 조 및 12 조의 제 요건에 따라 시행하는 시장조사가 약사법 위반의 판촉추진 목적 경제적 이익제공 행위로 평가될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판촉추진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b>제 13 조 (시판후조사)</b>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증례보고서는 제출의무 최소 증례보고서 수로 제한하는 것이 보고의무 증례 수에 한하여 시판 후 조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이에 관하여 복지부 유권해석은 “식약청에 재심사 신청 시 안전성 평가조사의 대상개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증례 수를 기준으로 사례비를 지급”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위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자가 법정 최소 증례 수에 기존 또는 유사한 조사사례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탈락률을 고려하여 조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조사 진행 중 탈락된 경우에도 연구자에게 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p>	<p>적정한 증례 수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연구자의 귀책사유 없는 조사활동 중 탈락에 대해서 연구자에게 기존 조사활동에 대한 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에 따른 조사업무는 완료된 조사에 비하여 제한적이므로 지급하는 조사비는 완료된 증례의 경우에 비하여 일정 비율 감액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p>
	<p>증례보고서 당 30 만원 이내의 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은 무엇인지</p>	<p>운용기준 9.1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희귀질환, 장기 추적조사 및 빈번한 중대 이상 반응 보고 등의 추가적인 조사업무가 필요한 경우에 증례보고서 당 30 만 원 이내에서 적정 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p>
	<p>규약에 규정된 시판 후 조사 금액과 별개로 이에 더하여 IRB 심의비 및 병원의 간접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p>	<p>IRB 심사비 및 간접비는 IRB 심사비용 또는 시판후조사 수행을 위한 병원의 합리적 행정비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병원의 행정실비 지급에 해당하여 조사비와 별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규약 제 13 조 제 1 항 제 2 호의 조사대상 의약품을 "채택.구입 하고 있지 않은"의 의미(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여부)는?</p>	<p>OR 조건입니다. 채택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에 시판후조사를 의뢰하여서는 안 되고, 구입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에 시판 후조사를 다는 의미입니다.</p>
	<p>병원약사위원회(Drug Committee)에 통과된 것을 "채택"으로 볼 수 있는지?</p>	<p>볼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채택이란 해당 병원에 향후 해당 병원환자에 대하여 대상의약품을 처방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비추어 병원에서 대상의약품이 DC 심사를 통과하여 병원 의약품목록에 등재가 되면 위 규정상의 채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p>
	<p>PMS의 IRB 통과도 '채택'으로 볼 수 있는지?</p>	<p>불가합니다. 위 규정에서 채택 또는 구입이란 사업자의 시판후조사 의뢰 이전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상의약품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음이 확인된 것을 의미하므로, 시판후조사 의뢰</p>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 의하여 이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이루어진 해당 시판후조사에 관한 IRB 통과를 위 규정 상의 채택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PMS 사례비가 계약된 보건의료전문가의 요양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PMS 비용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PMS 비용의 세금 포함은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세금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요양기관간 거래로 발생하는 세금은 별도 지급 가능합니다.
	PMS 진행시 탈락률을 생각하여 추가적으로 더 많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용 가능한 최대%는 어느 정도인가?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고려요소가 다르므로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증례 수는 개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b>제 14 조 (시판후조사 외의 임상활동)</b>	임상시험계약 체결 전 임상시험 준비를 위한 연구자 모임에서 식음료를 제공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임상시험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모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구비하고, 연구자모임에서 사업자가 제공할 경제적 이익과 연구자가 제공할 용역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약정 (정당한 대가관계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포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임상시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산학협력단 또는 책임연구자가 소속된 의료기관(대학병원)을 통해 임상시험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임상시험은 규약 제 14 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 10 조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은 물론, 임상에 관한 용역 계약을 맺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보고서를 받기 전에 계약비용 전액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부합하는 적정 지급률은?	적정한 용역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율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계약 직후 50%, 종료 후 나머지 50%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1~2 차에 걸쳐 용역비의 70%까지를 지급하고 용역완료 후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경우 등은 적정한 지급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IRB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의료	불가합니다. 해당 시험이 임상시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기관에 임상 활동을 의뢰할 수 있는지?</p>	<p>험위원회(IRB) 등과 같이 시험과 관련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시험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확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타 요양기관의 임상시험위원회에서라도 승인이 되어야 시행 가능합니다.</p>
	<p>'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자발적 관찰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p>	<p>사안별 개별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순수하게 의약품의 시판 후 사용과정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추가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과 범위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적법하다고 보나, 처방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의사들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액의 연구비를 지급한 경우, 경쟁제품의 침투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고 주요의사들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증례보고서 양식이 해당 제품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사항들을 단순하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부작용과 해당 제품의 상관관계를 조사 연구하기에 부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p>
	<p>자발적 관찰연구가 판매촉진목적으로 행하여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p>	<p>판매촉진목적으로 오인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료기관과 계약을 하더라도 사실상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p>
	<p>임상연구가 본래 목적이 아닌 리베이트로 오인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회사에는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은지?</p>	<p>임상시험 비용의 지급이 리베이트로 인정되지 않도록 (1) 연구수행의 정당성, 필요성을 확보, (2) 보건의료전문가 및 기관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 (3) 연구결과물의 신뢰성 및 제공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 (4) 연구비 세분화 및 개별 항목 비용의 적정성(FMV) 검토, (5)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영업/마케팅 부서 관여 배제, (6) 지식재산권 등 상응하는 반대급부 보장, (7) 임상연구 완료 후 연구비 전액 지급, (8) 연구결과의 활용 등 필요 요건 준수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CRO를 통해 임상연구를</p>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진행하는 경우 CRO의 평판 확인, CRO의 내부 준법규정 및 시스템 운용현황 파악 및 COMPLIANCE 규정에 관한 교육 충실성 검토 등의 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체결 시 CRO의 의무로 공정거래법, 약사법령, COMPLIANCE 규정 등의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 역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회사가 CRO에 대한 정기/수시 COMPLIANCE 교육과 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이를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p>
	<p>계약을 통한 임상을 진행할 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적인 미팅에 대한 비용은 제품설명회에 준해서 지급이 가능한지?</p>	<p>임상시험과 제품설명회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제품설명회로 대체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상시험 계약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계약체결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p>
	<p>사업자가 후원한 연구결과의 학회지 게재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지?</p>	<p>사업자 주도의 연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학회지 게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연구자 주도 연구의 경우에는 개별 사안별 검토를 요합니다. 참고로, 연구자 주도 연구의 사업자 후원 자체가 적법하고 사업자가 연구 결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며 자사 의약품의 홍보를 위하여 학회지 게재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다수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한적인 경우에 지원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자가 연구 결과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아니함에도 학회지 게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전문가 대신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p>
<p><b>제 15 조 (전시.광고)</b></p>	<p>의학전문지와 같이 요양기관이나 학회 이외의 기관이 발행하는 광고매체에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규약의 적용대상인지?</p>	<p>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신문방송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사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p>
	<p>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등이 발행하는 소식지에 실시하는 광고가 규약의 적용대상인지?</p>	<p>사안별 개별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는 규약 5.4의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요양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단체로서 규약의 적용대상에 해당</p>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하므로 소식지가 운용기준 11.1.1의 광고매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광고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학회와 병원이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의 전시광고비 상한금액은 어느 쪽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p>	<p>세부운용기준 제 11 조 제 1 항 5 호에 따라 주최단체의 성격에 따라 부스비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참여하고자 하는 행사의 실제 주최자의 성격에 따라 부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주최자에 대한 판단은 해당 행사 책임자 및 운영진의 소속, 행사명, 행사장소, 참석대상, 공문 발행주체, 입금주체 등 행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공문 발행처와 비용 입금처가 학회라는 사실만으로 학회 기준의 부스비를 제공하는 것은 규약위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p>
	<p>병원에서 주최하는 환자 교육을 위한 강의 책자에 대한 광고비 지원이 가능한지?</p>	<p>불가합니다. 현행 운용기준상 요양기관이 제작한 광고매체로서 배포 대상이 광고매체를 제작한 요양기관 이용객에 한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요양기관 등에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광고매체로 보지 않습니다.</p>
	<p>의협신문, 약사공론 등과 같이 발행 주체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이사(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매체는 규약 제 15 조 및 운용기준 적용되니까?</p>	<p>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전문가가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형식상으로는 보건의료전문가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 볼 여지가 있으나,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요양기관 등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을 규제하기 위한 규약의 목적취지를 고려할 때, 신문법 상 등록되어 독자적인 언론활동을 수행하는 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광고비 기준에 따른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규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p>
	<p>의대 동문회보 또는 학회 회원명부에 광고를 실시할 수 있는지?</p>	<p>불가합니다. 규약 15.1, 15.3 및 5 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학회를 포함하여 요양기관 등에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광고매체는 운용기준 11.1.1에 경우에 한정되므로 의대 동문회보나 학회 회원명부는 사업자가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광고매</p>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스, 광고 개수의 제한이 적용이 품목별 적용이 아닌 회사별 적용인지?	현행 운용기준은 부스 및 광고의 개수 또는 비용지급한도를 규정함에 있어, 사업자를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스, 광고의 개수와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의 품목별이 아닌, 사업자 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규약 제 8 조에 따라 학회를 후원 하고 그 대가로 부스, 광고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규약 제 15 조에 따른 추가 부스, 광고 지원이 가능한지?	불가합니다. 규약 제 8 조에 따라 부스, 광고기회를 제공받는 경우 규약 제 15 조에 따라 별도의 부스, 광고의 필요성은 비교적 낮고, 규약 제 15 조가 부스, 광고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 8 조에 따른 경우 제 15 조에 따른 부스, 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약 제 15 조 웹사이트에 모바일 웹사이트가 포함되는지?	포함됩니다. PC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사이트는 그 본질은 동일하므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사이트 통틀어 연 1000 만원, 월 100 만원까지 광고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특정학회의 모바일 웹사이트에 연 1000 만원 지급하면 동 학회의 웹사이트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한 개의 학회에서 복수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각 사이트별로 운용기준 11.1.3에 따라 연 1,000 만 원, 월 100 만 원 한도 내의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불가합니다. 운용기준 11.1.3의 광고비 한도는 각 학회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하나의 학회가 복수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자가 각 학회에 지급하는 웹사이트 광고비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회에서 여러 개의 산하지회( ex. XXX 학회 000 연구회 등)를 운영하는 경우 그 산하지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광고에 대한 별도 지원이 가능한지?	사안별 개별 법률검토를 요합니다. 해당 지회의 모 학회로부터의 독립성 여부, 즉 (1) 별개의 학술단체인지 (2) 별도의 독자적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규약에 따라 부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스의 최소면적기준은?	부스의 크기 3m*3m는 부스 상한금액 (300 만원 또는 100 만원)을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지급하기 위한 크기이고, 그보다 작은 크기의 부스도 가능합니다. 단, 부스의 크기가 3m*3m 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한 금액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p>
	<p>부스전시를 위하여 사업자 직원이 학술대회 장소에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학술대회 등록비의 납부 여부는?</p>	<p>불가합니다. 학술대회 등록비는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학술대회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공유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부스의 운영을 위하여 학술대회 장소에 입장하는 사업자 직원이 이러한 등록비를 학회에 납부하는 것은 등록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학회에서 이러한 등록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의 부스전시를 위하여 학회에서 요구하는 비용이므로 운용기준 11.1.5의 부스 광고비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p>
	<p>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와 같은 장소에서 국제학술대회에 직후 국내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경우 양자를 별개의 학술대회로 보아 운용기준 한도 내의 부스비를 각 지급할 수 있는지?</p>	<p>사안별 개별 법률검토를 요합니다. 양 행사에 있어 부스비 수령 주체의 개별성, 참석 대상자들의 유사성, 부스전시 내용의 유사성, 설치된 부스시설 사용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행사의 독립, 개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p>
	<p>하나의 학술지에 여러 면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까?</p>	<p>사안별 개별 법률검토를 요합니다. 규약 15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학술지에 하나의 광고만을 실시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규약 2조, 5조, 15조의 지에 비주어, 하나의 학술지에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여러 건 게재하거나, 학술지 배포대상과 전혀 무관한 제품 광고를 게재하거나, 회사 이미지 광고를 여러 건 게재하는 등 비합리적인 복수광고의 경우에는 규약 위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p>규약 제 15 조 제 4 항 단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판촉물 금액범 위는?</p>	<p>1만원(VAT 포함) 이하 입니다. 본항의 "소액"의 범위는 개별요양기관 제품설명회에 관한 규약 10.4, 운용기준 7.5의 규정을 준 용하여 1만원 이하로 금액기준은 소비자가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p>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2019.1.1.시행되는 IFPMA Code of Practice에 따라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한 물품의 판촉물 사용이 금지됩니다.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별도 지원 없이 부스, 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 운용기준 제 11 조 제 1 항에 따른 한도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규약 8.6은 제 7 조(기부행위) 또는 대회 개최운영 지원)와 경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약 제 15 조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고, 규약 3.8에 따르면 운용기준 11.1.5의 학술대회에는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를 포함하므로, 위와 "아닌" 한 위 국제학술대회의 부스비도 운용기준 11.1.5의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웹사이트 광고의 경우 광고비를 일시 지급 또는 분할 지급 모두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학회의 기존 웹사이트에 대한 배너광고 외 학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메일 발송되는 뉴스레터에 대한 배너광고가 가능한지?	불가합니다. 운용기준 11.1.(ii)은 "웹사이트"로 한정하고 있고 웹사이트란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웹 서버에 정보를 저장해 놓은 집합체를 의미하므로, 학회가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이메일은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광고매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스 방문자에게 추첨권을 제공하여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여도 되는지?	불가합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의 의약품 광고는 약사법에 위반되므로 부스 방문자에게 경품의 형식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시.광고 후원하기 위해 단체성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어떤 항목을 사전 검토하면 되는지?	기부대상 기준인 운용기준 제 4 조 제 1 항을 참고하여 단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소속 의료인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 (연구회 또는 학회)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것을 요양기관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학회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규약 상 요양기관과 학회의 부스 및 광고비 한도액을 달리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약학 학술단체가 특정 병원과 밀접하게 연계 (주요 임원진, 법인 소재지 등)되어 구성되거나 운영되는 경우에는, 형식상 학술 모임의 외형을 갖추었다더라도 규약상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금액기준을 적용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위 규약 규정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스에서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불가합니다. 견본품은 의약품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최소포장단위로 최소개수로만 요양기관에 제공 가능합니다.
<b>제 16 조 (강연 및 자문)</b>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강연/자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규약에서 규정한 지급금액의 요건만으로는 강연 및 자문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충분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 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이 있는지, 2) 강연자 또는 자문인의 수가 의학약적 정보습득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인지, 3) 의학학적 전문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지, 4)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반복적으로 의뢰하고 있는지, 5) 특정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반복적으로 의뢰되고 있는지, 6) 업무의 내용은 계약서에 상세하게 명시되고 그에 해당하는 업무수행내용에 대한 증빙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는지 등에 종합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본사에서 진행하는 advisory meeting 에 국내 보건의료전문가의 참석이 가능한지? (마케팅 목적이 아닌 회사의 제품구상 및 질환치료에 대한 글로벌 표준 확립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항공료, 숙박료, 자문료에 범위가 국한됨.)	사안별 개별 법률검토를 요합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Q&A 에서 '회의형태 이루어지는 자 문회의 등은 외부강의에 해당한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제품설명회 개최시 좌장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강연비에 준하여 좌장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처리시 좌장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관해야 합니다.
	심포지엄에서 40 분 강연을 한 경우 1 시간에 상한금액 사례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강연료는 강연 시간에 비례하여 금액을 산정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 시간 30 분 강의를 진행한 경우 2 시간의 상한액을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점(2017. 2. 3.자 국민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답변), 개정 전 약에서는 40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강연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연 의뢰의 목적(의약학적, 전문적 정보습득)이 충분히 달성되었다는 전제에서는 40분 강연에 대한 대가로 1시간 상한 범위 내에서의 강연료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p>
	<p>1박 2일 심포지엄 진행시 차는 좌장을 2일차 강연을 진행한 경우 각각 사례금을 지급해도 되는지?</p>	<p>기본적으로 강연에 대한 요건 준수가 담보되고 강연/좌장으로서 역할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p>
	<p>강연료 및 자문료 외 별도의 여비 제공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지급기준이 무엇입니까?</p>	<p>강연료 및 자문료와 별도로 실비의 숙박, 교통, 식음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게는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부산에서 진행되는 비숙박 제품 설명회에 서울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전문가가 강연하고, 늦은 밤 행사가 종료된 경우 숙박 제공이 가능한지?</p>	<p>강연행사진행 일정상 불가피하게 늦은 밤 종료되어 숙박이 필요하거나 이른 아침 행사가 시작되어 전날 숙박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숙박의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p>
	<p>공직자등에 포함되는 보건의료전문가가 강연자 및 청중으로 참석한 경우 여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실비의 숙박, 식음료, 5만 원 이하의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p>	<p>강연자가 제품설명회의 전체 일정에 청중으로서 참석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일반 보건의료전문가 참석자와 동일한 범위의 숙박, 식음료, 기념품 제공이 가능합니다.</p>
	<p>공정경쟁규약, 청탁금지법, 보건의료전문가가 속한 기관의 규정 등 각 규정의 상한액이 상이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p>	<p>각 규정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금액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p>
	<p>사업자가 학술대회 시 런칭심포지엄을 지원하는 경우, 런칭심포지엄 강연자에 대한 강연료를 사업자의 연간한도(300만원)에 포함</p>	<p>사업자가 학술대회 런칭심포지엄을 지원하는 경우, 런칭심포지엄 강연자에 대한 강연료는 사업자의 연간한도에 포함되며, 분기별</p>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켜야 되는지?	협회 신고하는 강연료 지급내역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강연료 및 자문료 지급내역을 협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경우,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사업자가 강연료 및 자문료 지급내역을 협회에 보고하는 경우, 보건 의료 전문가의 성명과 소속을 포함하므로 계약체결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제 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Q&A

조항	질문	답변
	사립학교 부속 설립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계약직, 임시직 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인가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제 2 조제 2 호의 공직자 등에 포함 됩니다. 다만,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청탁 금지법 적용대상에 속합니다.
	세브란스병원 의사 A와 삼성서울병원 의사 B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인가요?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으로 의사 A는 청탁금지법 대상자이고,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설립한 협력병원임으로 의사 B는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의사 B가 성균관대와 근로계약을 맺은 교수일 경우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Key point : 학교법인과 협력병원인지의 구분 - 국립병원, 독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소속 의사는 공공기관 직원 (공직자 등에 해당)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가 B 대학교 시간강사를 겸임하는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등에 있어 청탁금지법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하나요?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는 '교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9. 1. 1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되어 '교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제약회사 임상부서 A가 사립대의대 교수이면서 같은 대학의 학교법인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B와 임상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을 수 있나요?	임상부서와의 회의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 44조 4항 중 회에 해당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1인 3만원 이내에서 식사를 제공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b>참고판례</b>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서울대학교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주거나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는 것은 의사로서의 진료업무이지 교육공무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1420 판결)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국내의사를 강연자로 초빙하여 해외에서 다국적 제약사를 대상으로 제품 설명회를 하는 경우 강연비 지급	청탁금지법 속인주의로 인하여 외부강의 사례금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기준은 어떻게 되나요?</p> <p>영업사원 A가 자사의 의약품 처방 및 회식지원 목적으로 학교법인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제품설명회를 하고 1인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해당되나요?</p>	<p>회식지원 목적의 제품설명회는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상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숙박제품 설명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세브란스병원 의사 A와 서울대병원 의사 B에게 강의를 요청한 경우 강의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p>	<p>학교법인 소속인 의사 A에게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1시간 100만원이 지급 가능하나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1시간 50만원, 1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의사 B가 서울대학교 소속인 경우에는 의사 A와 같이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1시간 50만원, 1일 100만원 정도의 강연료 지급이 가능하나, 병원 소속인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므로 1시간 40만원, 1시간과 시 최대 60만원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2018년 1월 17일 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p>
	<p>A 제약회사가 고혈압 치료제인 신약을 개발하여 판매하면서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국립대학병원 의사 갑이 제품 설명회에 참석하여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p>	<p>의료법 상 제품설명회에서 10만원 이하 식음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갑이 제공받은 10만원 상당의 음식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제약회사 직원 A가 국립대학병원 소아과 의사 갑에게 다음 달에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p>	<p>제품설명회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은 약사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므로(항) 식사 대접 '약속' 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p>	<p>국내 사립대학 교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p>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 따르게 됩니다
	국적은 한국이지만 해외 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국내에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주체는 공직자 등인바, 외국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제2조제1호라목에 당하지 않음), 외국대학소속 교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기관 제품설명회에 지급할 기념품이 판매시가가 개당 7만원이나 공항면세점에서 5만원에 구입하는 경우 5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판매시가와 구입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경우 구입한 영수증이 있는 경우 구입한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판매시가와 구입가격이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허위로 오인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 직원 A는 회사비용으로 새로 부임한 OO 의료원 OO 과 과장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했습니다. 청탁금지법 또는 약사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부임, 취임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 하여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였으므로 제약회사 직원 및 OO 과 과장은 2배 ~ 5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A가 속한 제약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 등에 의거한 허용되지 않는 경제적 이익 범위에 해당 됩니다
	제약회사 직원 A는 공직자 신 분인 OO 의료원 OO 과 과장에게 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보내고 회사의 비용으로 정산을 하는 경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4항 관련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 부견보지부 유권해석)
	제약사 A가 우수한 학생 육성 등을 위한 목적으로 甲 사립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주는 경우?	사안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수혜자가 특정 대학소속(의과대학)이거나 제약사가 학생 선정에 관여하는 등 사업시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는 불가하므로,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제약사 B가 OO 학회에서 매년 주최하는 OO 학술상으로 후원을 하는 경우?	규약의 기부행위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나, 특정 보건의료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술상을 이용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본 FAQ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협회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거래관행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제약사 B가 어려운 환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계획중인 학교법인 병원에 의약품을 기부하는 경우?</p>	<p>학교법인 병원 소속 개인에게 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병원으로 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p>
	<p>제약회사 메디칼부서 A가 OO대학교 부속병원 의사인 B에게 OO 관련하여 자문을 의뢰하고 1인당 7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접대한 경우?</p>	<p>약사법 시행규칙 44조 4항관련 단일기관 제품설명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탁금지법 음식물 3만원 가액한도 초과하여 2배~5배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제품개발본부 직원 A가 시장조사업체 B를 통하여 의사들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시장조사업체 B가 의사들에게 시장조사비 명목으로 5만원 상당의 넥타이를 제공한 경우?</p>	<p>공정경쟁규약 내 시장조사의 기준에 의거하여 시장기관이 의뢰자를 공개하지 않고 시장조사에 대한 사례로 5만원 상당의 넥타이를 지급하는 것은 댓가성으로 보기 어려우며 정당한 권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p>